



문화재보호법 시행령

[시행 2021. 6. 10] [대통령령 제31600호, 2021. 4. 6, 일부개정]

문화재청(법무감사담당관) 042-481-4788
문화재청(안전기준과) 042-481-4923
문화재청(근대문화재과) 042-481-4882
문화재청(천연기념물과) 042-481-4981

제41조의2(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)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재를 말한다.

- 1.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재일 것
- 2. 문화재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돌봄사업(이하 “문화재돌봄사업”이라 한다)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일 것

[본조신설 2021. 4. 6.]

제41조의3(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)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재돌봄센터(이하 “중앙문화재돌봄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.

[본조신설 2021. 4. 6.]

제41조의4(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) 제41조의3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법 제8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(이하 “지역문화재돌봄센터”라 한다)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4. 6.]

제41조의5(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)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
 -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- 나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 - 다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
 - 라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 - 2. 문화재돌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춘 것
 - 가.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
 - 나.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
 - 3. 사업계획서가 적절할 것
- ②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4. 6.]

제41조의6(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)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
-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·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4. 6.]

- 제41조의7(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)** ① 문화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8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역 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해야 한다.
-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6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 4. 6.]

부칙 <제31600호, 2021. 4. 6.>

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